

## 시간제등록학생운영에관한규정

제정 2013. 10. 1    개정 2014. 5. 29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학칙 제 28조의 2에 의하여 시간제등록학생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선발시기)**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시기는 다음과 같다.

1. 통합반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.
2. 별도반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.

**제3조(등록자격)**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한다.

**제4조(등록서류)** ① 본 대학의 시간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.
2. 등록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1부.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.

②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선발방법)** ① 시간제 등록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별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한다.

② 본 대학에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기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는 우선하여 선발한다.

**제6조(등록)** ① 본 대학의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등록금은 학점 당 등록금을 책정하며, 당해년도 소속 학과(계열)의 해당학기의 등록금에 비례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7조(선발취소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 6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.
2. 제 4조의 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.
3. 전염병, 기타 질환 등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.

**제8조(성적평가)** 설강된 전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9조(학점취득)** ① 학점은 강의시간 5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를 이수한 경우에는 1학점으로 하되 실습과목은 본 대학 교육과정에 의한다.

② 시간제 등록학생의 매학기 최대신청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.

**제10조(교육과정 및 수업)** ① 본 대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준용한다.

② 등록학생의 편의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장이 정하는 대학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1조(학년배정)** 시간제 등록학생에게는 특별히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학위수여)** ① 등록학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총장명의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에 등록하여 해당전공과목을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
2. 타 대학에서 취득학점과 합산하여 최소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

② 제 1항의 학위수여를 위해 본 대학 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·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3조(학적관리)** 등록학생의 학적은 전일제 학생과 구분하여 취득학점 등을 기록 관리하고 제증명을

발급한다.

**제14조(학번부여)** 기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재등록할 경우의 학번은 본 대학에 최초 부여받은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.

**제15조(준용)** 시간제 등록학생 운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6조(징계)** 본 대학의 학칙, 이 규정 및 기타 내규를 위반한 자는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